

#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38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업무가 인권담당관에서 여성가족정책실(여성권익담당관)로 이관됨에 따라, 사건 심의기능을 수행할 ‘성희롱·성폭력 심의위원회’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성희롱·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9까지 신설)

나. 비밀유지 의무를 심의위원회 의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(안 제21조의10 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9. 29.~10. 5.'21. 4. 29. ~ 5. 20.) 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‘성폭력’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.

4. ‘2차 피해’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.

가. 수사·재판·보호·진료·언론보도 등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 피해

나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.)

다.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

1)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

- 2) 감봉·정직·강등 등의 징계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- 3) 전보, 전근, 직무 재배치, 직무 미부여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- 4)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
- 5)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- 6)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- 7)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- 8)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

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성희롱·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, 공무직,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의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·성폭력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시장이 성

희롱·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.

1. 성희롱·성폭력의 판단(2차 피해 포함)
2.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
3.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
4. 그 밖에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

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.

제21조의3(심의위원회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.

③ 위원은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21조의4(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1조의5(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(친족이었던 자 포함) 관계에 있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

② 사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이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6(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
2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
3.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4. 위원이 제21조의10제4항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
5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6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
7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21조의7(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1조의8(심의위원회 회의)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의9(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)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2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22조의2) 제4항 중 “조사과정”을 “조사나 제21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”으로, “처리”를 “처리, 심의”로, “조사 과정”을 “조사나 심의 과정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자에게는”을 “사람에게는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3항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3항제2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성희롱·성폭력 심의위원회 존속기한)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  
년으로 한다.



는 불이익 조치

1)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
2) 감봉·정직·강등 등의 징계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
3) 전보, 전근, 직무 재배치, 직무 미부여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
4)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

5)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기회의 취소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
6)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

### 3. (생략)

#### <신설>

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
7)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
8)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

#### 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#### 제21조의2(성희롱·성폭력 심의위원회

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, 공무원,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의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·성폭력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시장이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.

1. 성희롱·성폭력의 판단(2차 피해 포함)

2.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

3.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

4. 그 밖에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

<신 설>

<신 설>

지에 관한 사항

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.

제21조의3(심의위원회 구성) ① 심의

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.

③ 위원은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21조의4(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21조의5(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(친족이었던 자 포함) 관계에 있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

② 사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이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6(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

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
2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
3.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4. 위원이 제21조의10제4항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
5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6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
7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21조의7(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1조의8(심의위원회 회의) ① 심의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22조의2(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) ① ~ ③ (생략)  
④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

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의9(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)

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10(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조사나 제21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과정----- 처리, 심의-----

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, ⑥ (생략)

제33조(시민참여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41조(기금의 관리·이용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2. (생략)

3.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~ ⑧ (생략)

제50조(격차개선위원회 구성) ①·

② (생략)

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·노동 등

----- 조사나 심의  
과정-----

-----.

⑤, ⑥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시민참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사람에  
게는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기금의 관리·이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

-----

-----.

1.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사람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격차개선위원회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(생략)
  2.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④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  2. -----  
----- 사람
- ④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심의를 위한 성희롱·성폭력 심의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「성평등 기본 조례」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 경비 발생이 예상됨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## 【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】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성희롱·성폭력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

### 4. 작성자

-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행정6급 정은진(02-2133-5324)